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6. 18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5. 29. 채우진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 5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(2019. 6. 1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채우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따른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 신설
(안 제2조제3항)
- 2)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4조제2항 ~ 안 제4조제4항)
 -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1인당 150만원

-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: 150만원
 -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: 100만원
(안 제4조제2항)
 - 부·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일 경우의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 (안 제4조제3항)
 - 출산축하금 중복지급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
(안 제4조제4항)
- 3)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)
-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- 4) 별지 제1호서식 ‘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’ 에 보호자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에 해당 또는 미해당 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,
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의 확인 사항 중 “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사항 : 모 부 (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)” 을 추가함 (안 별지 제1호서식)
- 5) 별지 제2호서식 ‘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’ 의 신청인(부모 또는 보호자) 중 “신생아와 관계” , “부 또는 모 등록장애여부” 를 추가함
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검토보고 (최종의 전문위원)

○ 조례안 개정취지

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할 뿐 만 아니라

장애인 권익보호에도 기여하여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.

○ 개정안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3항의 경우는 「장애인복지법」 1)에서 정한 등록장애인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
- 안 제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출하금 지급 기준 및 지원액을 규정 <표 1> 하였음

<표 1>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급기준) (생 략)	제4조(지급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<신 설>	② <u>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 1. <u>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: 150만원</u> 2. <u>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: 150만원</u> 3. <u>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: 100만원</u>
<신 설>	③ <u>부·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한다.</u>
<신 설>	④ <u>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
-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를 해당 동장이 확인하도록

1) 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하는 등 출산축하금 지급기준과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음.

○ 종합의견

- 2019.5.31.기준 마포구 주민등록 인구는 총 374,719명 중 등록장애인은 13,113명으로 인구대비 3.50%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평균 4.03%(주민등록 인구 9,762,062명, 등록장애인 393,214명) 보다 0.23% 낮음.

〈표 2〉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

2019.5.31.기준				(단위 : 명)
구분	마포구 (A)	서울특별시 (B)	구별 평균 (B/25개구)	마포구 비율 (A/B)
등록장애인 수	13,113	393,214	15,728	3.33%
주민등록 인구	374,719	9,762,062	390,482	3.83%

(자료출처: 마포구, 행정안전부)

- 2018년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서울시 전체는 231명이며 마포구는 2명의 여성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,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은 13개구가 제정·운영 중에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.

〈표 3〉 신생아 1인당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

구분	누계	2016년	2017년	2018년	비고
마 포 구 (지원금액)	8,472 (1,499,000)	3,277 (420,400)	2,739 (370,800)	2,456 (707,800)	구비 지급
서울특별시 (마포구 장애인)	17 (여15, 남2)	8 (여7, 남1)	7 (여6, 남1)	2 (여2)	시비 지급

(자료출처: 마포구)

- 따라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조²⁾에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’ 하고 같은법 제9조³⁾에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’라고 규정되고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⁴⁾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⁵⁾(혼인과 출산)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번 조례안이 의결·공포됨에도 등록장애인 부·모의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미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시행 홍보와 신청·처리에 많은 관심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됨.

2) 제7조(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3)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4)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5) 제8조(혼인과 출산)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